



연지급결제이용약정서

(B2B구매카드대출-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의 B2B전자결제서비스 연지급결제 관련하여 “한국씨티은행B2B 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이하 “서비스이용약관”이라 합니다) 및 “연지급결제특약”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

제 1 조 (거래대금의 청구)

- 본인이 거래하는 MP(Marketplace)(이하 “e-MP”라 한다)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전송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거래대금 지급방식은 다음 중 택일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 만기지급식 (만기일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며, 만기일전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별도의 선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자동할인식 (결제예정일 당일 본인이 별도로 선지급 신청 없이 자동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됨)
- 본인은 제1항에 따라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에 의거하여야 하며, 은행이나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거래대금의 결제계좌)

- B2B전자결제서비스 연지급결제 계좌는 다음 계좌로 지정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은행은 제1항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3 조 (선지급 수수료)

- 본인의 선지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은행의 선지급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선지급일의 직전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기간별 가산금리」로 계산되는 선지급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기간별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기 간	가 산 금 리
당 일	%
일이상 ~ 일이내	%

제 4 조 (거래대금 청구 거절)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은행이 승인한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한국씨티은행

CR-A-589 (2024.4.15) 심의필 2404-02-028

1.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B2B구매카드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2. 당해 구매기업이 은행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3. 당해 구매기업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당해 구매기업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5.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B2B구매카드대출이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당해 구매기업에 대하여 은행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5 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은행은 서비스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거래대금 입금 시 공제 후 제2조 제1항의 결제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정보제공 및 시기)

- ① 본인과 은행은 다음의 정보를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환하며, 추심 및 판매, 대출실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상호 동의 또는 구매기업의 서면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사법기관 및 금융감독 관련기관의 적법한 요청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제공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B2B구매카드대출에 관한 사항 :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거래승인금액 포함), 연체정보
 2.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3.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정보
 4. 기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 ②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기는 한도조회전문 전송, 매매계약서전문 전송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전문 전송 시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면책사항)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사고로 인한 구매기업 또는 e-MP와의 분쟁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거래대금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 외부요인에 의한 은행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그 내용이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외부요인에 의한 은행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기타사항)

- ① 각 당사자는 신규 구매기업 또는 기존 구매기업의 변동 사항이 있거나 부실화 징후 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구매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 되는 경우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서, 연지급결제특약, 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음으로 연지급결제특약, 서비스이용약관의 순서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서비스이용약관, 연지급결제특약,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또한 이 약정서 제6조에 의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함.

본 인 :

(인)

본 인 : (인)